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시설임대 BULK TANK 임대차 계약서

미래 에너지

주 소: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개월안길 147

벌크사업부 대표전화 : T) 031-352-8199

F) 031-252-2416

액화 석유가스 공급 계약서

(갑'이라 칭함)과 (공급자) 미래에너지 (을'이라고 칭함)는 아래와 같이 이 계약은(사용자) 액화 석유가스(LPG) 공급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제품명, 가격)

1) 이 계약에 의하여 '을'이 '갑'에게 판매할 제품의 종류 및 가격은 아래와 같다.

제품	공급가격	월 사용량	비고	
LPG(프로판)	원/m³	300kg		

- 2) 제1항의 가격은 공급계약당시 '갑. 을'합의된 가격이며 정유사 및 수입사의 가격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상. 하향 조정 한다. [정유사 LPG판매가격표]
- 3) 이 계약 기간 중 '을'은 제1항의 제품을 수급 계약에 차질 없이 '갑'에게 공급 하여야 하고 '갑'은 그 소요량 전량을 '을'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.
- 4) '을' 이 공급하는 가스의 주문은 원격수신기로 확인 공급하나, 24시간 전에 주문을 원칙으로 한다.
- 5) 제품의 계량 및 환산은 출하지 혹은 인도지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6) 결제는 체적판매/m' 요금을 산정한다.

제 2 조 (대금지급 방법)

- 1) 제품(LPG)의 대금 결제는 월마감 후 10일이내 현금 결제 한다.
- 2) 대금 납부기한 후 10일이 경과해도 대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'을'은 제품공급중단 혹은. 막음조치 등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'갑'은 '을'에게 어떠한 민,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
제 3 조 (제품의 인도지)

- 1) 제품 인도지는 '갑'의 사업장 또는 '갑'이 지정한 소형저장 탱크로 한다.
- 2) '제품'에 대한 소유권은 '제품'이 '을'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 되었을 때 또는 '갑'의 인도장비와 '을'의 저장탱크인수장비 연결점을 통과 한 때에 '을'으로부터 '갑'에게 이전된다.

제 4 조 (계약기간)

- 1) 이 계약은 가스사용 시점부터 5 년간으로 한다.
- 2) 이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만료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이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2년 단위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.

제 5 조 (가스 공급의 중지)

- ※ 다음 각 호에 경우는 가스 공급을 일시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.
 - 1)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등 점검이 필요한 경우.
 - 2) 대금 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.
 - 3)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.

제 6 조 (안전관리)

'갑'은 LP가스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안전 관리를 하여야 하며 '을'이 LP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관련서류 요청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가스배상 책임보험 및 이행보증 가입)

- 1) '갑' 과 '을'은 가스 재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스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* 가스배상 책임보험 가입방법(국내 보험회사) : 별도 가입 / 現 화재보험 내 특약추가
- 2) '갑'은 '을'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외상대금물품지급보증을 가입해야 한다.
 - - * 결재조건 : 월 마감 후 10일이내 현금입금,

제 8 조 (통지의무)

- 1) 대표자의 변경.
- 2) 상호, 주소, 영업장소의 변경.
- 3) 합병 기타 당사자에 관한 중요한 변경.
- 4) 타인에게 사업장 양도 및 임대지

제 9 조 (손해배상)

- 1) 일방 당사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2) '을'이 시설을 지원한 의무계약 기간 중 '갑'이 타 업체에서 가스공급을 받을 경우, 결재 대금이 1개월 이상 지연 연체 되었을 시 '을'은 제품공급 중단과 본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. 이 경우 '갑'은 잔여계약기간 동안 발생될 '을'의 매출이익분과 별도 작성된 시설물 목록표 상의 시설대금에 대하여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.
- 3) '갑'은 '을'의 가스 지연공급으로 인한 영업적 손실에 대한 매출이익분을 배상 청구 하여야 한다.

제 10조 (가스사용 시설의 매도이행)

- 1) 계약기간 내 LPG저장탱크시설물 소유권은 '을'에 있고 <mark>계약기간 만료 후</mark> 잔존가액 지불시 '갑'에게 양도 된다.
- 2) '갑'은 도시가스로 전환 시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시설비 잔존가액을 지불한다.

제 11 조 (불가항력)

천재지변, 홍수, 폭동, 전쟁, 반란 정유사 원유공급사정의 악화 기타 당사자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.('갑''을'동일한 조건임.)

제 12 조 (해 지)

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13 조 (기재 외 사항)

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의한다.

제 14 조 (합의 관할)

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분쟁에 관하여는 '을'의 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.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상호/사번:

'갑' (사용자) 주 소:

사업장주소:

전화번호: T)

성 명:

'을' (공급자) 상호/사번: 미래에너지 / 529-14-01768

주 소 :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개월안길 147

전화번호: T)031-352-8199 F)031-252-2416

성 명: 허상욱 외1명인

시설물 임대차 계약서

이 계약은 (이하 '갑'이라 칭한다.)과<u>미래에너지(이하 '을'이라 칭한다.)</u> 간에 <u>년 월 일</u> 계약 체결하고, '갑'은 '을'로부터 LP가스(이하 '제품'이라 한다.)를 원활히 인수, 저장 및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'갑'은 '을'이 계약상의 제반의무를 성실이 이행할 것을 신뢰하고 있으므로 이 계약에 기재된 제반 약정과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양 당사자가 아래와 같이 합의함을 증명하는 것이다.

제 1 조 (시설물의 설치)

(1) '을'은 이 계약 임대할 시설물 가격표시에 의거 설치된 제품 및 '시설물' 을 '갑'의 사업장에 설치하기로 한다.

	임대할 시설물의 가격표시		
종 류	수 량	가격(VAT별도)	
Ton 탱크	4.9 톤	28,000,000 원	
지하 / 지상 배관설비		50,000,000 원	
합 계		78,000,000 원	

제 2 조 (시설물의 소유권)

- 1) 이 계약 기간 중 '을'은 시설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시설물에 '을'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상표 및 기타 표시를 할 수 있다.
- 2) 계약기간이 5 년 만료 후에는 '을'이 소유권을 유지, 계약만료 후 '갑'이 시설물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인수 할 수 있다.

제 3 조 (시설물의 사용)

'갑'은 이 계약기간 중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'을'이 공급하거나 지정하는 제품의 인수, 저장 사용을 위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시설물의 관리 기타)

- (1) '갑'은 시설물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법,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'을'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.
- (2) '갑'은 이 계약기간 중 '을'의 사전 동의 없이 제1조 제1항 뒷면 참조 지원시설 목록표 의거 설치된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설정 기타시설물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처분을 할 수 없다.
- (3) '갑'이 '을'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항의 처분을 함으로써 시설물의 존립할 수 없게 된 때에는 '갑'은 자기 부담으로 '을'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배상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4) '갑'은 안전 관리상 위험 요소의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'을'에게 조치 및 협조 요청하다.
- (5) '탱크 관련 외관검사(5년), 개방검사(10년)은 '을'이 전액 지불한다.

제 5 조 (해 지)

- (1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'을'은 '갑'에 대해 서면 통고로써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(ㄱ) '갑'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.
 - (ㄴ) '갑'이 파산하거나 파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.
 - (口) '갑'이 계약기간 중 제품의 소요량을 전량 '을'으로부터 구입치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.

제 6 조 (손해배상 및 담보)

- (1) '갑'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'갑'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'을'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'갑'은 '을'의 요구에 따라 즉시 배상 하여야 한다.
- (2) '갑'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지되면 '갑'은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<mark>시설물 잔존가액을</mark>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기 간)

이 계약은 액화 석유가스 공급계약 과 동일기간 동안 유효하다.

제 8 조 (시설물의 회수)

계약기간 동안 '갑'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'을'은 시설물을 '갑'로부터 회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'갑'은 '을'이 시설물 철거를 위해 '갑'사업장 진입을 무조건 허락한다.

제 9 조 (통 보)

이 계약에 관한 모든 의사 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이 계약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전달하여야 하며, 이와 같이 통보되면 적법하게 통보된 것으로 본다.

제 10 조 (합의 관할)

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분쟁에 대하여는 '을'의 관할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 11 조 (기재 외 사항)

이 계약에 특별히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습에 따라양 당사자가 상호간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.

이상의 약정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씩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 인후 각기 1통 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.

상호/사번:

'갑'(사용자) 주 소:

사업장주소:

전화번호: T) F)

성 명: (인)

'을' (공급자) 상호/사번: 미래에너지 / 529-14-01768

주 소 :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개월안길 147

전화번호: T)031-352-8199 F)031-252-2416

성 명: 허상욱 외1명(인)

탱크 용량 상이함



계약서 명시된 탱크 4.9톤

4.9톤 소형 저장탱크

실제 설치된 탱크 497리터

